

**이것이 알고 싶다**

**개봉선원 사용장소 시설기준**

**◎ 질 의 : \*\*\***

이번에 핵의학과를 개설하려는 신규 병원입니다.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여쭙어 봅니다.

1. RI 단독 정화조의 통기관이 일반 배기관에 연결되어 있는데 법적 허가기준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2. PET-CT 환자가 약 1시간동안 안정을 취하는 방, 체외검사의 계측실에 급기, 배기로 되어 있지 않고 급기, 순환으로 되어 있는데 법적 허가기준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3. 먼저 핵의학과 개설 과정에서 사용허가 신청을 먼저하고 시설검사를 미루어 할 수 있는지, 미루어 할 수 있다면 기간이 몇개월 정도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 답 변 : 박운환(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방사선안전규제부 방사선이용규제실)**

귀하의 질의는 개봉선원 사용장소의 시설기준에 관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원자력법의 방사선 안전관리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3장 제1절 제1관에 기술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술적으로 귀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자면,

1. 핵의학과의 배기는 독립배기로 배기정화장치를 통과한 후 환경으로 배출하도록 설계, 시공되어야 합니다. 이는 방사선 작업종사자의 내부피폭을 저감하고, 환경으로 배출되는 배기중에 함유된 방사성핵종의 농도를 배기중의 배출관리 기준 미만으로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2. PET/CT실에 부속된 사용장소중 분배실과 환자안정실의 배기는 반드시 독립적으로 배기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순환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방사선작업종사자의 내부피폭을 저감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입니다.
3. 시설검사는 방사성동위원소 신규 사용 또는 사용변경허가에 기술한 대로 시설이 구비되고 유지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시설검사는 방사성동위원소 사용허가를 득하신 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